

서울교육대학교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글로벌 교육 발전과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, 양 기관의 정보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(이하 ‘양 기관’ 이라 한다)의 글로벌 교육 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세계시민교육의 서울교대의 교육과정 및 석박사 학위 과정 반영
2.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국제연수 공동 추진 및 협력
3. 양 기관의 교육자료 등 콘텐츠 공유 및 활용
4. 기타 상호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지원

제4조(비밀엄수)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협정기간)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6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이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정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효력발생) 양 기관은 협정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협정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정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8. 2. 27.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김경성

김 경 성



United Nations
Educational, Scientific and
Cultural Organization

APCEIU

Asia-Pacific Centre of
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
under the auspices of UNESCO

국제연합
교육과학문화기구

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

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
원장 정우탁

정 우 탁